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499

제출년월일 : 1998. 8. 18.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   ○ 정부의 지방행정기구·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실과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계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관련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   ○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2조)
   ○ 계 직제 폐지에 따른 조항 개정 (안 제5조)

3. 본문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당항리" 다음에 "산 57번지"를 삽입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5조(담당) ①당항포관리사업소에 관리담당을 둔다.
②관리담당은 지방행정주사를 보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치) 사무소는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에 둔다.	제2조(위치) · · · · · · · 산57 번지 · · · .
제5조(계) ①당항포관리사업소에 관리계를 둔다. ②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를 보한다.	제5조(담당) ①· · · · · · · · 관리담당을 · · · · . ②관리담당은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.